

제 97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회의일자: 2026.6.29.

1. 회의 일시: 2026년 6월 29일(월) 13:00
2. 회의 장소: 온라인(Zoom)
3. 위원 정수: 11명
4. 재적 위원 수: 11명
5. 참석위원: 이경학(의장), 이민수(부의장), 이수연, 김윤경, 김산, 서지영(학생위원), 김종관(외부위원), 임성아(외부위원)
6. 회의안건: 학칙 개정(안) 심의
7. 회의내용
 - 성원보고: 간사(곽향미)가 재적 위원 11명 중 8명 참석으로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제7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평의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에 의해 개최 정족수가 충족되었음을 보고하다.
 - 이경학 의장: 성원되었음을 확인하고, 제97차 대학평의원회 개최를 선언하다.
 - 곽향미 간사: 전차회의록을 낭독하다.
 - 이경학 의장: 전차 회의록 채택 여부를 묻다. 김윤경 위원의 동의와 김산 위원의 재청으로 회의록을 채택하다.

● 학칙 개정(안) 심의

- 이경학 의장: 안건을 상정하고, 교육개발처 조장호 처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 조장호 처장: 2027학년도 모집인원 반영, 학사제도 및 교육과정 운영 관련 규정 정비, 조직 및 위원회 변경에 따른 사항 반영, 학위 명칭의 삭제 및 추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 따라 학생활동의 금지 및 학생활동의 사전 승인 개정 필요 등의 학칙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한 후 개정(안)의 주요 내용 설명을 시작하다.
- 조장호 처장: 제3조(모집단위 및 신입생 기준 입학정원) 만화콘텐츠스쿨의 만화캐릭터일러스트레이션 전공이 신설되면서 정원 전체에는 변화가 없지만, 웹툰만화콘텐츠전공의 인원이 만화캐릭터일러스트레이션전공으로 일부 편제된 점을 설명하다.
- 조장호 처장: 제26조(대체과목과 선수과목) 선수과목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정한 부분과 제30조(휴학) 관련하여 질병이나 병역, 여러 휴학 종류들과 구분하기 위해 일반 휴학이라는 표현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부분, 제38조(시간제 등록생 운영)에서 폐과된 유아교육과와 관련된 내용 삭제, 제42조(교육과정의 연계 운영 및 외국대학과의 공동운영) 대학의 직업 교육 관련 용어가 여러 상위법에서 다르게 서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 상위법 규정을 적시하는 것으로 변경, 제52조(평가시험)에서 사용하지 않는 '시험'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①항 '각 교과목 총 수업 시수의 1/4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당해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항목은 다음 조항인 제53조(성적 및 취소)로 재배치 한 점을 설명하다.
- 조장호 처장: 다음으로 제61조(학생활동의 금지)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을 반영하여 게시물 부착과 관련된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제62조(학생지도와 상담)에서는 대학에서 실시하는 AI 학습 설계 지도교수 제도와 동료학습 설계 멘토제도 도입을 위해 학생지도와 상담 관련 내용을 재정비 한 부분임을 설명하다.

- 조장호 처장: 다음으로 13장은 직제가 변경된 것으로 취업창업지원센터가 취업진로지원센터와 창업지원센터로 조직이 분리된 부분을 반영하였고, 신설된 AI 혁신센터와 에듀플렉스센터를 부속기관에 포함시켰음을 설명하다. 제83조(학사구조 조정 등), 제84조(자체평가) 조항은 개념에 따라 용어를 변경한 부분이며, 제86조(학칙 제·개정안의 공고, 의견제출, 심의, 공포)는 학칙 개정 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과 의견 제출자에게 결과를 통지하는 방식의 구체화를 위한 부분인 점을 설명하다. 별표 1의 학위 명칭은 만화캐릭터일러스트레이션전공과 융합콘텐츠학과의 학사 명칭을 명시한 부분인 점을 설명하다.
- 조장호 처장: 그 밖의 추가로 교양교육원의 졸업학점을 기존 10학점에서 15학점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다. 우리 학교 교양교육의 역할에 있어서 전공과 연계·심화된 경험과 교육의 확장을 추구하고자 교양교육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졸업 학점제도에 있어서도 15학점으로 늘리는 방안을 오늘 교무위원회에서 논의하였음을 설명하다. 관련하여 교육과정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며, 추진절차에 있어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위원들의 의견을 묻다.
- 김윤경 위원: 별표 2의 애니메이션전공의 졸업요건인 '2023학년도 전기 졸업생부터 2025학년도 후기 졸업생까지는 프로젝트 교과목으로 편성된 교과목 중 두 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이 항목은 스쿨에서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학칙 부칙에서도 삭제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조장호 처장: 군 휴학이나 질병 휴학 학생들 중 아직 복학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전 규정을 적용하여 현재 부칙에 따라 이수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항을 남겨두었음을 설명하다.
- 이수연 위원: 교양 학점에 관련된 부분은 의견 수렴 기간에 의견을 드린 바 있음을 설명하며, 지금 시점에 학칙에 반영하는 게 절차적으로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조장호 처장: 교육과정혁신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 바탕으로 학칙을 개정하는 순서에는 동의하나 교육과정 개발을 하는 교양교육원의 경우 개발의 근거가 필요한 점과 교육개발처 내에서 개발 및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규정상 문제는 되지 않아도 프로세스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칙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될 때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 이수연 위원: 교양교육원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하나 2027년의 교육과정에 관련된 사항이고,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근거는 교육과정혁신위원회에서 교육정책을 정해서 진행하는 것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절차는 우리 대학 규정에 있는 절차대로 따르는 게 맞고, 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이민수 위원: 교양교육원의 입장에서는 7월에 교양 교육과정개발운영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교육과정을 심의하고 9월에 본부에 제출을 하게 되면 10월에 대학 차원의 교육과정 심의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있어서 15학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근거가 지금 없는 상황인 점을 설명하다.
- 이수연 위원: 그 근거는 교육과정혁신위원회에서 세우는 정책으로 충분하다라는 점을 이야기하다.
- 이민수 위원: 교육과정혁신위원회에서도 학칙에 내용을 근거로 편성절차나 운영 방법 등의 내용을 심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지를 묻다.
- 이수연 위원: 학칙에서 15학점으로 정했기 때문에 15학점으로 개편하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의 차원에서 15학점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먼저 진행되어야 하고, 그 이후 절차에 따라 교양교육원에서 제시를 해주시는 것에 대한 교육과정혁신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5학점으로 확정을 하면, 그 이후 학칙 개정(안)에 반영하고,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받는 것이 적합한 절차임을 설명하다.
- 이경학 의장: 이수연 교수 의견에 동의하며 학점 변경으로 인한 예산이나 마이크로 디그리나 복수 전공 제도와의 상관관계 등도 살펴봐야 하며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조장호 처장: 지금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를 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수연 교수와 이민수 원장의 절차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여 교육과정혁신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심의한 결과를 대학평의원회에

서 심의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이야기하다.

- 이경학 의장: 교육과정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대학평의원회를 한 번 더 개최하여 논의하기로 하고 위원들에게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묻다.
- 이수연 위원: 직제 부분에 산학협력단 소속 센터들은 전부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지 검토가 필요하며, 취업창업교육지원센터가 분리되면서 창업지원센터의 소속이 산학협력단 소속이 된 점, 같은 산학협력단 산하 센터들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확인하여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조장호 처장: 그 부분 확인하여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하고, 빠른 시간 내에 한번 더 회의를 개최하여 교양 교육과 관련된 내용 포함해서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받고자 하는데, 운영 일정이 어떤지를 묻다.
- 곽향미 간사: 7월 말쯤 다른 안건으로 대학평의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나, 이번 안건은 그 전에 회의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하다.
- 이경학 의장: 회의를 한번 더 진행하는 것에 대해 다른 위원들에게 동의여부를 묻고, 모든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회의를 한번 더 진행하되, 학생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제안하다.
- 이경학 의장: 학칙 개정(안)은 다음 회의에서 심의하기로 결정한 후 논의를 종료하다.

폐회선언: 추가 안건이 없음을 확인하고 폐회를 선언하다.(13시 35분)

위의 사실을 확인함

2026년 6월 29일